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9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9.

(3) 회 부 일 : 2024.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잦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 ----- -----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 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 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 ----- -----.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 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 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 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 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 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	② ----- -----장애인용 쇼 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 -----장애인 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설 등-----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③ -----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

2.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약 1,466,879명 중 전동휠체어 소지자는 90,037명,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52,510명에 달하는 등 상당수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14년 자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필요 및 소지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4	2017	2020
필요	전동휠체어	9.5%(154,581)	8.5%(131,512)	9.1%(133,193)
	전동스쿠터	6.7%(109,249)	6.2%(96,152)	5.0%(73,094)
소지	전동휠체어	3.7%(59,748)	4.1%(63,015)	6.1%(90,037)
	전동스쿠터	3.2%(52,456)	2.6%(39,578)	3.6%(52,510)

주1):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가 주된 장애(2020년 5월 기준 1,466,879명 추정)인 경우의 필요 및 소지 현황

주2): 2023년 현황은 정리 중으로, 2024년 4/4분기 완료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6)에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동보장구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응답자 150명 중 18.6%가 ‘한번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이 짧다’고 답했으며, 충전소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설치 개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5%로 나타났다.

- 참고로, 이동 중 배터리가 방전된 경험 유무에 대해 ‘있다’는 48.7%로 나타남.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6)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음.

- 다만, 동 사업 실시 이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추가 설치 및 예산 요구 등이 없어 그대로 종료되었으며, 향후, 실시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2019년 단년도 사업)

○ 사업목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충전소 보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주요 공공시설에 충전기 설치

○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 사업예산 및 규모: 44억원 / 전국 2천여 개소(* 주요 관공서, 지하철역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시행방법: 자치단체 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각 시도

- 산출내역: 2,200천원×2,000개소

○ 사업실적(2019년 12월말 기준, 단위: 대)

합계	설 치 장 소											
	행정 청사	교통 시설	민간 업무 시설	문화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 자 시설	숙박 시설	종교 시설	운동 시설	기타
3,312	1,557	484	31	113	18	117	53	715	6	4	82	132

주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충전기까지 포함된 수치로, 동 사업으로 신규설치된 충전기는 1,983대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및 편의시설 종류 등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1, 2, 3).

다만, 민간이 시설주인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동보장구의 충전에 따른 전기 사용료 등 비용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

□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전동보장구충전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함)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²⁾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기기로, 「장애인보조기기법」을 통한 지원 및 관리가 적합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등편의법」보다는 「장애인보조기기법」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통한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3 12 24 24 휠체어용 배터리 및 충전기 (Batteries and battery chargers for wheelchairs)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

□ 그러나 「장애인보조기기법」은 보조기기의 교부 및 대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³⁾, 비용보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주에 대한 비용보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연구*에 포함된 실태조사를 통해 급속충전기 이용 시 설치 개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어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공 취지에는 동의함.

*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장애인개발원, '16년도)

□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한 설치보다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을 통한 설치 지원이 적합

□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는 시설 이용상의 편의제공을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비치해야 할 용품으로 정하고 있어 주로 대상시설을 이용할 경우 편의제공에 필요한 용품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읍·면·동사무소, 업무시설(점자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문화 및 집회시설(보청기기), 판매시설(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저시력용 독서기, 보청기기 등)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신중검토, 수정수용)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한 설치확대보다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을 통한 설치·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해 하위법령(시행규칙 별표3)으로 개별 규정하고 있는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의 추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개정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27.>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6) 대피소
- (7) 공중화장실
-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 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 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참고자료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

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	--

	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 빵·떡·과자 등을 조 리하거나 제조하여 판 매하는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참고자료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 1 종 근 린 생 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 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 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 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 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 성지원컴퓨터 및 보 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 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 군·구청에 한한다), 휠 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 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
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